

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

1 채용직급 및 예정인원

채용기관	채용인원 (신분)	계약기간	업무	근무시간	보수수준
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(경북 구미시)	1명 (기간제 근로자)	2024.7.8.부터 2024.9.30.까지	취업지원상담사 업무	주5일 근무 9:00~18:00 (1일 8시간)	월 2,290,850원 (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)
	1명 (육아 휴직 대체근로자)**	2024.7.8.부터 2024.12.27.까지			

* 기간제 근로자 모집으로 임용 후 정규직 전환 예정 없음

*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는 예정된 근무기간(계약기간)에도 불구하고 대체근로자 사용 사유가 소멸(휴직자 조기복귀 등)될 경우 근로계약이 조기 종료됨

2 채용방법 및 전형절차

- 채용방법: 공개채용
- 전형절차: 응시원서접수 → 서류전형 → 증빙서류 진위확인 → 면접전형

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

구분	내 용	
응시 자격	연령 요건	○ 체험형 청년인턴: 접수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
	필수 요건	○ 채용예정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○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및 전화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○ 기본적인 행정사무 및 장애인고객 상담이 가능한 자로서 각 호 중 하나에 속하는 자 1. 해당 전문분야(사회복지, 직업재활, 심리, 상담, 특수교육 관련분야) 학사학위 취득자 2. 관련분야 자격증* 소지자 * 장애인재활상담사, 사회복지사, 직업상담사, 청소년상담사, 평생교육사, 상담심리사, 정신보건사회복지사, 정신보건임상심리사, 임상심리사, 특수교사, 직업훈련교사, 공인노무사 3. 공단 사무지원직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
	결격 사유	○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,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2조 및 인사규정시행규칙 제19조에 저촉되는 자(붙임 참조) ※ 해당 시 응시자격 제한 및 합격·채용 취소
우대사항	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: 전형단계마다 각 과목별 만점의 5~10% 가점 부여 ※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: 채용전형 단계별 만점 대비 경증장애인 5%, 중증장애인 10% 가점 부여 ※ 경증·중증 장애인 구분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○ 상기 우대사항 중 2개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하며, 과락자에게는 우대사항 미적용	

4

제출서류

- ① 응시원서, 경력 및 경험 기술서, 자기소개서 각 1부(소정 서식으로 작성)
-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
- ③ 응시자격 증빙서류(자격증) 사본 1부(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제출)
- ④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빙서류 사본(해당자 중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제출)
- ⑤ 그 외 자격증 및 학력·경력(경험)증빙서류 사본(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제출)

5

서류접수 등 주요일정(예정)

1) 서류전형

- 접수기간: 2024. 6. 17.(월) ~ 2024. 6. 28.(금) 17:00까지
- 접수방법: 전자(방문, 우편 접수 불가)
 - 접수 이메일: tomato@kead.or.kr
 - ※ 메일제목: “취업지원상담사 기간제근로자 지원서_000(본인이름)”
 - ※ 휴직 대체근로 지원자의 경우 메일제목과 지원분야에 “취업지원상담사(대체근로자)”라고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.
 - ※ 마감일 17:00까지 도착 분에 한함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2024. 7. 1.(월) (합격자 개별통보)
- 진위확인용 서류접수: 2024. 7. 2.(화) 18:00까지 제출
 - *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, 제출방법은 개별 안내
- 고득점 순에 따라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(동점자 합격처리)하며, 응시자 수 미달 시 서류심사 생략 및 해당 배수 미만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

2) 면접전형

- 일시/장소(예정): 2024. 7. 3.(수)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회의실
 - *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빌딩 6층

3) 최종합격자 발표: 2024. 7. 5.(금)

4) 채용(예정)일: 2024. 7. 8.(월)

6

기타 유의사항

- 상기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(변동 시 개별 통보)
- 지원자의 출신지역, 가족관계, 학력, 연령, 성별 등 직무능력과 관련없는 내용을 응시원서에 기재할 경우 채용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,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
-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제출서류 중에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소정의 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 합격(입용)이 취소되며,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우리 공단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편의제공 사항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지사 기업지원부 전수빈 대리(☎054-450-3092)에게 문의하거나,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2024. 6. 17.

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장

【붙임】

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 채용결격사유

【국가공무원법 제33조】
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<개정 2010. 3. 22., 2013. 8. 6., 2015. 12. 24., 2018. 10. 16., 2021. 1. 12., 2022. 12. 27., 2023. 4. 11.>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[전문개정 2008. 3. 28.]

【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사규정 제12조】

제12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<개정 2018. 7. 3., 2022. 5. 4.>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<개정 2022. 5. 4.>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6의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<신설>

2019.6.4.>

6의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<신설 2019.6.4.>

7. 삭제 <개정 2022. 5. 4.>

8.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,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9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<신설 2019.6.4.>

【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9조】

제19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

- ①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제출서류 중에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소정의 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중지시키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0.31., 2018.7.16.>
- ②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 <신설 2018.7.16.>